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68824(본소), 2021가단524258(반소) 판결
[물품대금 ·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85679(본소), 2021나85686(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6882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채명성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파산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64,055,341원임을 확정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외품 등의 제조 및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화장품, 식품 무역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B는 2020. 2. 12. 원고와 사이에, B가 중국 회사에 손소독제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로부터 D 손소독제(이하 ‘이 사건 소독제’라 한다) 60,000개를 240,000,000원(1개당 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가 체결한 이 사건 소독제 매매계약의 구체적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소독제 60,000개 중 1차 주문분 30,000개는 2020. 2. 14. 인수하고, 2차 주문분 나머지 30,000개는 2020. 2. 17. 인수한다.

○ B는 2020. 2. 12. 원고에게 1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 B는 2020. 2. 14. 1차 주문분 30,000개를 인수받으면서 1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잔금 60,000,000원 및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 B는 2020. 2. 17. 2차 주문분 30,000개를 인수받으면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B는 원고에게, 2020. 2. 12. 이 사건 소독제 1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2. 17. 이 사건 소독제 1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잔금 60,000,000원 및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2020. 2. 18. 이 사건 소독제 1차 주문분 30,000개가 원고의 창고에서 출고되었으나, 나머지 2차 주문분 30,000개는 출고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바. B는 2021. 2. 18.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54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21.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B의 파산선고 당시 쌍방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는 이후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545호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손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잔금채권 64,055,341원(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B의 파산선고일 전날인 2021. 2. 17.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55,341원의 합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실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 원고는 2021. 3. 30.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21. 3. 30. 당초의 소를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를 제조완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B에게 원고의 창고에

보관중인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를 인수하고 이에 대한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B는 원고에게 위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잔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파산채권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청구원인)

B의 파산선고 당시까지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에 대한 B의 잔금 지급 및 원고의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손소독제 2차 주문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쌍방의 채무가 이행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한 선택에 대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가리키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B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를 1개당 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B가 2020.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가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 B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채무자 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가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B도 그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B의 파산선고 당시까지 원고와 B 모두 쌍무계약인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위 매매계약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2021. 3. 2.경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보내 위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를 2020. 2.경 이미 제조 완료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B에게 위 소독제를 인수하여 갈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B가 이를 인수해가지 않은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이 소독제를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한 상태로 B에게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B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60조에 따라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적하는 민법 제460조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는 규정은 ‘변제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변제제공’은 변제완료를 위한 채권자의 수령 기타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 있어서 그 변제완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협력의 태양과 관련하여 채무자측에서 변제를 위해서 해야 할 행위의 정도방법을 정하고 변제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써, '변제제공'만으로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만족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독제를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한 상태로 B에게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B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소독제 납품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독제 2차 주문분 30,000개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60,000,000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